##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337

발의연월일: 2025. 5. 2.

발 의 자:윤준병·정동영·허성무

복기왕 · 송옥주 · 주철현

이원택 · 임미애 · 조계원

허종식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통령과 국회의원, 정무직 공무원과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직무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되, 기소 대상은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검사 및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 및 감시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본연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사 범위와 기소 범위가 일치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공소제기 외에는 기소 여부 및 공소 유지 업무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담당하게 되어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 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라 수사처검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3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수사처검사는 25명 이내, 수사처

수사관은 40명 이내, 그 밖의 직원의 수는 20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위공직자 범죄 척결이라는 수사처 설립 목적 실현을 위한수사 효율성 보장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며, 지난 2022년 발간된 '조직역량 강화 방안 마련 정책연구 보고서'에서도 수사처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인력이 본연의 수사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수사처검사 정원을 25명에서 40명으로, 수사관 정원을 40명에서 80명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하여수사처 검사가 기소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와 기소 범위를 일치시키고, 관련범죄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독립된 수사기관 및 행정기관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수사처검사의 임기 제한을 폐지하되 적격심사를 받도록 개선하고 수사인력을 확대함으로써 고위공직자의 부패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공직사회의 부패를 착결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라목 등).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라목 중 "그 고위공직자범죄와"를 "고위공직자범죄와"로,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를 "범죄"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하여 다음 각 호에"를 "관한 수사 및 공소제기와 그 유지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수사처는 예산에 관하여 「국가재정법」 제40조에 따른 독립기 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25명"을 "4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임기는 3년으로 하고, 3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을 "정년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그"를 "적격심사, 그"로 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40명"을 "80명"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20명"을 "50명"으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수사처검사의 적격심사) ① 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수사처검

사에 대하여는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하여야 한다.

- ② 인사위원회는 수사처검사가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처장에게 그 수사처검사의 퇴직을 건의할 수 있다.
- ③ 인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의결 전에 해당 수사처검사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처장은 제2항에 따른 퇴직 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에게 그 수사처검사에 대한 퇴직명령을 제청할 수 있다.

제17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중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을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으로 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4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	라
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	<u>고위공직자</u>
<u>직자범죄와</u> 직접 관련성이	<u>범죄와</u>
있는 <u>죄로서</u> 해당 고위공	<u>범죄</u>
직자가 범한 죄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제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① 고위공직자	설치와 독립성) ①
범죄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u>관한 수사 및 공소제</u>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	<u>기와 그 유지에</u>
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를 둔다.	
1.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	<u>&lt;삭 제&gt;</u>
<u>사</u>	
2. 제2조제1호다목, 카목, 파목,	<u>&lt;삭 제&gt;</u>
하모에 해단하는 고의곳지자	

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의 공소제기와그 유지

② · ③ (생 략) <신 설>

제8조(수사처검사) ① (생 략)

- ② 수사처검사는 특정직공무원 으로 보하고, 처장과 차장을 포 함하여 25명 이내로 한다.
- ③ 수사처검사의 <u>임기는 3년으로 하고, 3회에 한정하여 연임</u> <u>할 수 있으며, 정년은</u> 63세로 하다.
- ④ (생략)
- 제9조(인사위원회) ① 처장과 차 제 장을 제외한 수사처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위하여 수사처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 ② ~ ⑥ (생 략)

제10조(수사처수사관) ① (생 제10조(수사처수사관) ① (현행과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수사처는 예산에 관하여	
「국가재정법」 제40조에 따른	
독립기관으로 한다.	
제8조(수사처검사) ① (현행과 같	
<u> </u>	
②	
<u>40명</u>	
③ <u>정년은</u>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인사위원회) ①	
<u>적격심사, 그</u>	

② ~ ⑥ (현행과 같음)

략)

② 수사처수사관은 일반직공무 원으로 보하고, <u>40명</u> 이내로 한 다. 다만, 검찰청으로부터 검찰 수사관을 파견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사처수사관의 정원에 포함한다.

③ (생 략)

제11조(그 밖의 직원)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직원의 수는20명이내로 한다.

<신 설>

같음)
②
<u>80명</u>
•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그 밖의 직원) ① (현행과
같음)
②
50명
 제14조의2(수사처검사의 적격심
사) ① 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수사처검사에 대하여는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하여야
<u>한다.</u>
② 인사위원회는 수사처검사가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결을 거
쳐 처장에게 그 수사처검사의
퇴직을 건의할 수 있다.
③ 인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의결 전에 해당 수사처검사에
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충
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

제17조(처장의 직무와 권한) ① 제17조(처장의 직무와 권한) ① ~ (5) (생 략)

⑥ 처장은 수사처의 예산 관련 | <삭 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국 가재정법 |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한) ① 수사처검사는 제3조제1 항 각 호에 따른 수사와 공소 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행 위를 한다.

② · ③ (생 략)

제26조(수사처검사의 관계 서류 와 증거물 송부 등) ① 수사처 검사는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 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

를 주어야 한다.

④ 처장은 제2항에 따른 퇴직 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에게 그 수사처검사에 대한 퇴직명령을 제청할 수 있 다.

~ (5) (현행과 같음)

제20조(수사처검사의 직무와 권 제20조(수사처검사의 직무와 권 한) ① -----고위공직 자범죄등에 관한-----\_\_\_\_\_

> ②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u>다.</u>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아 사건을 처 리하는 검사는 처장에게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 하게 통보하여야 한다.